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이정문・신동근・김철민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도종환 · 조승래 · 서영교

변재일 • 서영석 • 김병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 서만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의료인으로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하지만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제1호의2·제4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적용례) 제64조제1항제1호의2・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 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	
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	
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	
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	
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	
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
	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 4의2. (생 략)	2. ~ 4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
	운영한 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